

육아 취업 3개월 도전!

프롤로그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꼭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첫째가 7살이 되는 해에 첫째와 단둘이 떠나는 한 달간의 낭만적인 여행을 꿈꿨다. 현실은 둘째가 태어나고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면서 3개월간 순수한(?) 육아취업이 시작되었다.

육아휴직 준비

육아휴직을 떠올렸을 때, 당장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머리가 아파온다. 육아휴직 급여가 나온다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막상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부서장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지 등, 육아휴직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가끔 한 자녀에 대해 아빠나 엄마 1명만 가능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데,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특례(일명 '아빠의 달')	
시작일~3개월	4개월~종료일	시작일~3개월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통상임금의 40% (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원, 하한: 월 70만원) ※ 2017.7.1.이전 출생 자는 150만원 상한	통상임금의 40% (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위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를 직장복귀 6개 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사후지급분 제도 제외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표와 같이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은 40%를 지급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되는데, 지급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나 지급합니다. 직장 복귀를 꼭 하라는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다소 적은 금액이라 아쉽지만, 2016년부터 일명 '아빠의 달'이라는 특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의 지급액을 상향하고 100%를 바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2017년 7월생 자녀를 둔 엄마(월수입 300만원), 아빠(월수입 300만원)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할 경우

	기존	엄마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사후지급
		1~3개월	4~12개월	1~3개월	4~12개월	
엄마	300만원	112만5천원	75만원	300만원	300만원	337만 5천원
아빠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75만원	225만원
월 총 수입	600만원	412만5천원	375만원	500만원	375만원	
연간 총 수입	7200만원	4950만원(일시불 지급포함)	5100만원(일시불 지급포함)			

엄마 3개월 300만원의 80% = 240만원이므로 상한액 150만원 지급,
실지급 112만5천원
9개월 300만원의 40% = 120만원이므로 상한액 100만원 지급,
실지급 75만원
직장복귀 6개월 후 37.5만×3 + 25만×9 = 337만 5천원 일시불 지급

아빠 3개월 300만원의 100% = 300만원이므로 상한액 200만원 지급,
실지급 200만원
9개월 300만원의 40% = 120만원이므로 상한액 100만원 지급,
실지급 75만원
직장복귀 6개월 후 25만×9 = 225만원 일시불 지급



2년간 4350만원, 연평균 2175만원의 수입 감소가 보입니다. 하지만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출을 포함할 경우 기존의 현금흐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육아휴직에 대한 처우

육아휴직 자격을 가지고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 승진 및 승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고, 납부 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신 한 자녀당 부모 한 명에게 해당 기간만큼 국민연금에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판단해서 연차휴가 계산 시 휴직기간을 제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인 경우 개정법에 따라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경과

육아휴직 스타트

나름 개인적으로 큰 결심이고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하루하루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페이스북에 육아휴직 동안 일기를 남기기로 했다. 육아휴직 동안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사회생활이 단절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혼자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퇴근하게 되면 자신의 소소한 이

야기들과 고민을 토로하게 되고, 회사에서 지친 배우자가 대화를 받아주지 못하면 크고 작은 다툼들이 생기곤 한다. 휴직 동안의 SNS 활동이 내 자신과 부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기록을 남겼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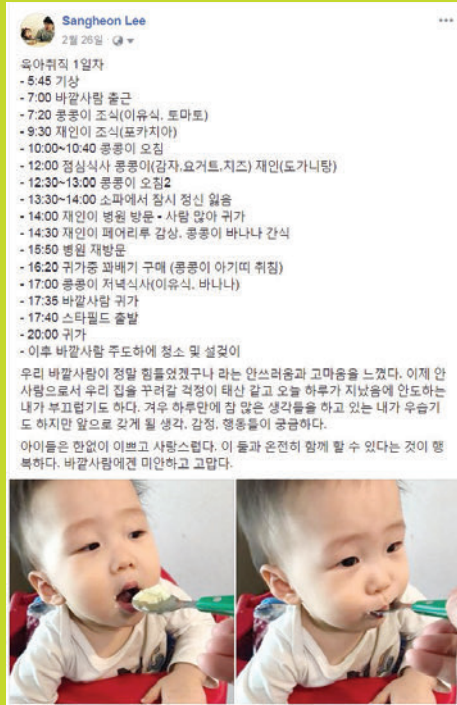


육아휴직 1일 차 (Feat. 첫날 일과)

처음으로 혼자서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아이와 집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을 때, 부담되면서도 설렘이 동시에 다가왔다. 아내 없이 두 아이를 책임진다는 것이 걱정도 되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현실은, 과중한 업무를 하나하나 처리하기 바빴다. 두 아이를 재우고 집안일을 다 마친 후에, SNS에 기록을 하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날의 소감은, 온종일 생방송을 진행한 느낌이었다. 바깥사람(아내)의 출근을 돕고, 첫째와 둘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둘째를 재우고, 점심 준비하고, 첫째 놀아주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계속 밀려와서, 일을 처리하면서 다음 일을 고민해야 했다. 물론 집안일과 육아에 능숙한 아내라면 더 쉽게 처리했겠지만, 처음엔 아내 역시 이렇게 당황하

고 힘들었을 것이다. 육아와 집안일을 많이 나눠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만의 큰 착각이었다. 지금까지 아내가 우리 집의 CEO였다면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이다.



육아휴직 1주 일차 (Feat. 힘에 부침)

일주일일이 되면서 육아와 집안일에 조금씩 손이 익어가고 있다. 동시에 바깥 사람(아내)에게 불평, 불만이 늘었다. 바깥사람이 퇴근하고 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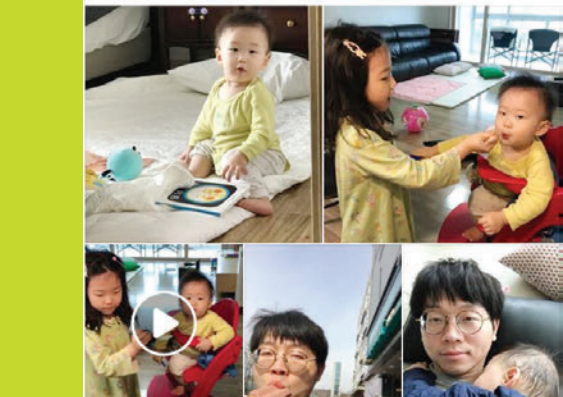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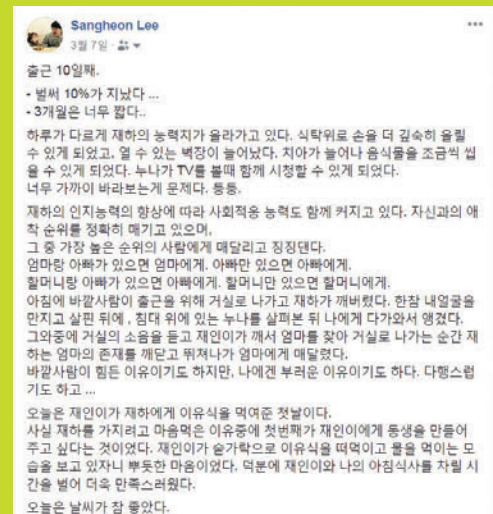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바깥사람 역시 피곤한 상태니 서로 톡톡대다 다투기 일쑤다. 둘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리 마땅치 않다 보니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데도 힘에 부치는 것 같다. Let it go ~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

육아휴직 10일 차 (Feat. 육아의 즐거움)

육아휴직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아이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촬영으로 따진다면 미숙촬영이라고나 할까. 둘째의 손이 닿는 물건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열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대되는 이유다.

아빠에 대한 애정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인다. 아빠에게 의지하고 투정 부리는 걸 보면서, 첫째 때 옆에 있어 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육아휴직 13일 차 (Feat. 육아사회생활)

육아에 가장 큰 고비가 사회생활이다. 첫째의 동네 친구 부모님들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놀이터나 친구 집에서 아이들이 노는 동안, 엄마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치원 생활, 선생님, 학원 등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평가들까지도. 육아아빠가 낯선 엄마들에게 불쑥 들이댈 용기가 없진 않지만, 3개월 단기 양육자로서 조심스럽게 처신 중이다.

매일 아침 첫째 머리를 묶어주는 게 상당한 스트레스다. 머리를 묶는 스킬도 쉽지 않지만, 매번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 고객의 요구는 그냥 양 갈래머리일지라도 매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나. 아빠에 대해 큰 기대가 없는지, 크게 신경 쓰는 눈치는 아니지만, 할머니가 묶어주실 때와는 다른 반응임은 분명하다. 그냥 마음을 비워야지.



육아휴직 46일 차 (Feat. 콧바람)

집에만 있다 보면 입에도 코에도 녹이 슬 지경이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맨날 같은 곳에서 맴도니 기분 전환이 될 턱이 없다. 예전에 바깥사람(아내)이 틈만 나면 놀러 가자고 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한다.

일하던 팀에서 여의도 나들이를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세먼지와 둘째의 미열을 무릅쓰고 나들이에 동참했다. 간만에 콧바람 쐬고 공국수를 먹었더니 아주 조으대!





육아휴직 마지막 날 (feat. 행복)

휴직 기간이 정말 후다닥 지나가 버렸다. 아이들의 주 양육자로서 그리고 안사람의 역할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중이었는데, 벌써 끝이 와버렸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했다.

바깥사람을 존경하게 되었고, 재인이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었고, 재하가 아빠라고 말을 하며 팔을 베고 단둘이 잘 수 있게 되었다. 계속 행복할 예정이다.



에필로그

육아휴직을 처음 마음에 둔 시기는 2012년 첫째 딸을 출산할 즈음이었던 것 같다. 아내의 출산과 더불어 맞벌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론은 아내가 1년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아내만 처가에서 지내면서 주말 부부로 지냈다.

첫째 딸이 3살이 되면서 처가 근처로 이사를 했고, 어머님과 아버님의 도움으로 육아와 맞벌이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즈음 아내의 육아휴직 제안이 시작되었다. 2년간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아빠와 딸 사이에 애착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당시에 아내가 읽던 오소희 작가의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주겠지'라는 자녀와의 여행에 대한 책이 원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내의 요구는 7살 되는 시점에 한 달간 여행을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아쉬웠고, 7살이 되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흔쾌히 동의했다. 물론 회사 분위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는 단서와 함께...

2016년 1자녀 계획이 변경되고 둘째를 가지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둘째가 태어나면 아내가 다시 육아휴직을 하고, 내가 이어받아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다. 육아 돌보미를 고용하면서 3개월만. 계획과 달리 아내의 육아휴직 종료 3개월 후에 어머님께서 육아를 도와주시기로 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3개월 독박육아가 시작되었다. 2024년 3월,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 다시 육아휴직을 할 계획이다. 🐾